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난 2월17일 LPG용기 재검사주기연장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시행 시기는 입법예고안보다 다소 늦어져 5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관련내용을 게재한다.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5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 이유

1973년에 제정된 현행의 LPG용기 재검사주기는 그간 용기의 품질 및 성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잦은 재검사 실시로 충전 및 판매 등 관련업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연료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가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싼 연료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재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검사주기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통용기의 안전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용기에 대한 폐기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용기 재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별표 22)

- 현행의 LPG 용기 재검사주기를 경과연수가 20년 미만 용기는 5년마다, 20년 이상인 용기는 2년마다로 완화함.

나. 유통용기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후용기 사용연한제 도입(안 별표 22)

- 경과연수가 26년 이상된 노후용기는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유통을 금지토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제1호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용기의 종류		재검사 주기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제외한다)	500L 이상	5년 마다	2년 마다	1년 마다
	500L 미만	3년 마다	2년 마다	1년 마다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500L 이상	5년 마다	2년 마다	1년 마다
	500L 미만	5년 마다		2년 마다
이음매 없는 용기 또는 복합용기	500L 이상	5년 마다		
	500L 미만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5년마다(설계조건에 반영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10년마다)		
	용기에 부착되지 아니한 것	2년마다		
용기부속품(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용기에 부착된 것(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기용 밸브 외의 내용적 125L 이하의 용기용 용기부속품은 제외한다)	검사 후 2년이 지나 용기부속품을 부착한 해당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마다		

비고

1. 재검사일은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의 경우에는 신규검사일부터 산정하고, 재검사를 받은 용기의 경우에는 최종 재검사일부터 산정한다.
2. 제조 후 경과연수가 15년 미만이고 내용적이 500L 미만인 용접용기에 대하여는 재검사주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삭제)
나.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6년
다. 내식성재료로 제조된 초저온 용기는 5년
3. 내용적 20L 미만인 용접용기 및 지게차용 용기는 10년, 자동차용 용기는 그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의 기간(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용 용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해당 자동차의 처령기간)을 첫번째 재검사주기로 한다.
4. 사용된 1회용 용기와 내용적 45L이상 120L 미만인 것으로서 제조 후 경과연수가 26년 이상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폐기한다.
5. 내용적 125L 미만인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부속품의 제조 또는 수입 시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해당 용기의 첫 번째 재검사를 받게 될 때 폐기한다.
6. 복합재료용기 및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되었을 때에 폐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2 제1호 표 중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용기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한 용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별표 22제1호 표 중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란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 후 경과년수가 20년이 경과된 용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별표 22제1호 표 중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란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내용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에 대한 내용연한은 별표 22 제1호 비고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이를 시행한다.

- ① 제조 후 경과년수가 28년 이상 경과된 용기는 2011년 4월 1일까지
- ② 제조 후 경과년수가 27년 이상 경과된 용기는 2012년 4월 1일까지
- ③ 제조 후 경과년수가 26년 이상 경과된 용기는 2013년 4월 1일까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규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휴지 중인 시설에 있는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그 휴지기간은 재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
1. 용기 용기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재검사기간이 되었을 때에 소화용 충전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 한다.	1. —

용기의 종류	재검사주기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용접용기	500L 이상 500L 미만	5년마다 3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이음매 없 는 용기 또 는 복합재 료용기	500L 이상 500L 미만	5년마다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 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 은 3년마다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 용기		5년마다(설계조건에 반영되고 지식 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년)	
용 기 부 속 지 아니한 것 에 부 속 되 지 아 니 한 것 에 비 하 여 는 것 은 제 외 한 단 어 가 없 다	용기에 부착되 지 아니한 것	2년마다	
검 사 후 2년 이 지나 용기부속품을 부착한 해당 용기의 재검사를 받 을 때이다			
비교 1. (생략) 2. 제조 후 경과연수가 15년 미만이고 내용적이 500L 미만인 용접용기에 대 하여는 재검사주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 중 첫 번째 재검사를 받는 용기로 는 알루미늄합금, 스테인레스강 등 내식성 재료로 제조된 용기는 4년 나.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6년 다. 내식성재료로 제조된 초저온 용기는 5년 3. (생략) 4. 회용으로 제조된 용기는 사용 후 폐기한다. 5. ~ 6. (생략) 7. 내용적이 50L 미만인 액화석유가스 용접용기의 신규검사 후 최초의 재 검사 주기는 4년으로 한다.			

2. (생략)

용기의 종류	재검사주기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용접용기 액화석유 가스용 용접용기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용 용접용기	500L 이상 500L 미만	5년 마다 5년 마다	2년 마다 2년 마다
1. (현행과 같음) 2. (생략) 가. (삭제) 나. (생략) 다.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사용된 회용 용기와 내용적 45L이상 120L 미만인 것으로서 제조 후 경 과연수가 26년 이상 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폐기한다. 5. ~ 6. (현행과 같음) (삭제)			

2.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2 제호 표 중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용기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한 용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별표 22제호 표 중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란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 후 경과연수가 20년 이 경과된 용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별표 22제호 표 중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란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내용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에 대한 내용연한은 별표 22 제호 비교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이를 시행한다.

- ① 제조 후 경과연수가 28년 이상 경과된 용기는 2011년 4월 1일까지
- ② 제조 후 경과연수가 27년 이상 경과된 용기는 2012년 4월 1일까지
- ③ 제조 후 경과연수가 26년 이상 경과된 용기는 2013년 4월 1일까지